

健康診断を受けましょう

건강진단을 받으시다

健康診断は、**安心して働き続けるための大切な制度**です。
事業者は健康診断の結果に基づき、**働く方の健康を守るための配慮**を行います。
건강진단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健康診断とは？ 건강진단이란?

日本では労働者の健康を守るため、**事業者に対し、常時使用する労働者(※1)を対象に健康診断を実施することを義務付けており、労働者にも受診義務があります。**
健康診断の費用は事業者が負担します。
一般健康診断(※2)を雇入れ時に1回、その後は年1回受診する必要があります(※3)。
事業者には健康診断の結果に応じて、必要な場合には勤務内容や作業環境の見直しなど、労働者の健康を守るための措置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日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1)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이며,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일반건강진단(※2)을 고용 시에 1회 받고, 이후에는 연 1회 받아야 합니다(※3)。
사업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의 재검토 등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契約期間が1年以上(予定を含む)で、1週間の労働時間が同種の業務に従事する通常の労働者の3/4以上の労働者です。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예정 포함)이고 1주일의 근로 시간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労働安全衛生法第66条の第2項及び第3項に基づき、有害な業務に従事する労働者に対しては特別の健康診断を実施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3: 労働安全衛生規則第45条に基づき、深夜業等の特定業務従事者は配置換えの際に1回、その後は6か月に1回受診する必要があります。
노동안전위생규칙 제45조에 근거하여 심야업 등 특정 업무 종사자는 배치 변경 시에 1회 받고, 이후에는 6개월에 1회 받아야 합니다。

健康診断項目の具体的な検査

건강진단 항목의 구체적인 검사

①既往歴及び業務歴の調査

기왕력 및 업무력 조사

②自覚症状及び他覚症状の有無の検査

자각 증상 및 타각 증상 유무 검사



⑥貧血検査

빈혈 검사

⑦肝機能検査

간기능 검사

⑧血中脂質検査

혈중 지질 검사

⑨血糖検査

혈당 검사

⑩血清クレアチニン検査※1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③身長、体重、腹囲、視力及び聴力の検査

신장, 체중, 복부둘레, 시력, 청력 검사



⑪尿検査

소변 검사



⑫心電図検査

심전도 검사



④胸部X線検査

흉부 X선 검사



⑤血圧の測定

혈압 측정



※1: 令和9年4月1日より一般健康診断の検査項目に追加
2027년 4월 1일부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 추가

それぞれの検査項目についてのイメージは、実際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각 검사 항목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多言語の問診票を準備する等の対応を行っている健診機関もあります。
詳細は受診予定の健診機関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다국어 문진표 등이 준비된 건강진단 기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진단을 받을 예정인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ひと、くらし、みらいのために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도도부현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